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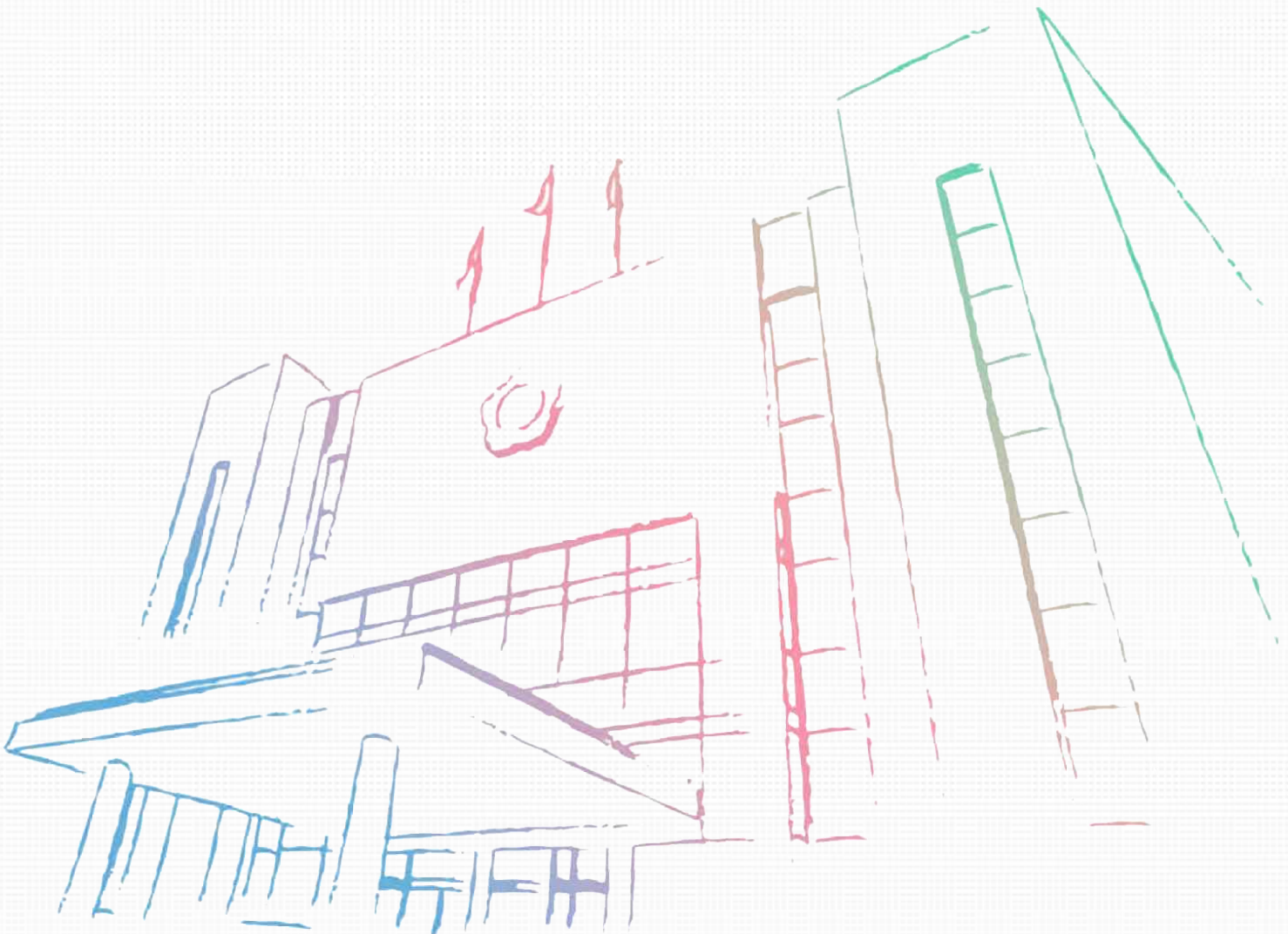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입법정보

2025년 7월





# 목차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자연재해대책법(개정) .....	2
2. 아동복지법(개정) .....	3
3.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	4
4. 수산업법(개정) .....	6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	7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9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10
8.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	11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
2.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5
3.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	16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부산광역시) .....	18
2.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전라남도 광양시) .....	23
3.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전북특별자치도) .....	25

## IV 국외 입법례

1.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	30
---------------------------------------	----

---

#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2호, 2025. 1. 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이 선고된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구·시설물을 철거 등의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이송·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3호, 2025. 7. 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징수 및 그 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0호, 2025. 7. 15.,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6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보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9.]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 2025. 5. 14., 전부개정]

### □ 개정이유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외에 양부모 자격 요건을 추가하며, 양부모와 양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방법 등(안 제6조)

- 1)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과 그 양육 환경 등을 매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함.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

나.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안 제7조)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관한 사항을 친생부모에게 알려주도록 함.

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 요건을 25세 이상으로 정함.
-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양부모교육에는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와 자녀의 양육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
- 3)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도록 함.

라. 사후서비스의 제공(안 제16조)

- 1)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함.
- 2)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양부모·양자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와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

##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717호, 2025. 7. 16., 제정]

### □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 시·도별 현황

- 부산

## 2

#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7. 18.] [인천광역시조례 제7553호, 2025. 7. 18., 제정]

### □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개방하여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예식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공공예식장 개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5조)
- 다. 사용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 관계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시·도별 현황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2025. 7. 18.] [경기도조례 제8507호, 2025. 7. 18., 제정]

### □ 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기후격차, 기후격차 취약계층, 기후건강 피해, 기후복지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기후격차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마.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시·도별 현황

- 경기

---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

\*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 1

##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234] 부산광역시

###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의 편성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제1호),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종결’로(제2호) 각각 정의하려 합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 하고,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재정사업의 종결 사유, 종결 건수, 예산의 증감 현황 등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을 마련할 때 그 지침의 적용 범위, 관리 절차·방법 등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재정사업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4. 6. 5. 의견제시 24-0120, 법제처 2023. 4. 3. 의견제시 23-0012, 법제처 2021. 6. 16. 의견제시 21-0143 참조).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합리적인 견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매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시의회가 종결된 재정사업에 관한 현황을 제출받으려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와 예산 증감 현황 등과 같이 종료된 재정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상적으로 재정사업을 집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해 시장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 아닌 결정한 후에 시의회에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시장의 재정사업 집행에 사전적·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재정사업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60, 법제처 2016. 4. 27. 의견제시 16-0100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8조제1항),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종결된 재정 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견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12. 17. 의견제시 24-0444,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6, 법제처 2023. 6. 23. 의견제시 23-0237,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08, 법제처 2016. 6. 17. 의견제시 16-0149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192] 전라남도 광양시

### □ 질의요지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광양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에서 ‘광양시 시책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양시조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정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제1조), 시장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하고(제5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제7조), 정정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제12조) 하는 등 시장으로 하여금 정보의 수집·검증·정정과 같은 일련의 관리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카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 등을 수집·정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로 보이지만 (각주: 법제처 『2024년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4, 522·523쪽 참조), 공표의 범위·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공표를 통해 정보 제공자 또는 유포자의 명예·신용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시정 등에 관한 상시적인 정보 수집과 검증이 시정에 관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사실상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광양시조례안에서 수집·검증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시책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시민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제2조제4호)이 어떤 내용의 정보인지 알기 어려워 해당 정보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5-0151] 전북특별자치도

### □ 질의요지

가.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도지사가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각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교육임을 전제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거나(제11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유자등이 관리하는 전기설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 점검결과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0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6항).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점검에 관한 사항과 전기설비가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이행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등이 전기설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4항 및 제5항).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법령상 선임·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반드시 전기안전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교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외의 사람에게 실시하는 전기안전 등의 교육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주민에게 전기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전기재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IV. 국외 입법례

---

\* 출처: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12호] (2025. 7. 8.)<sup>1)</sup>

- 민간 드론 기업 DJI가 2025년 농업박람회(Agrishow)에서 공개한 ‘제4차 농업용 드론 산업 인사이트 보고서(Agricultural Drone Industry Insight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기 약 40만 대를 운용 중이다. 농업에서 무인항공기는 주로 파종, 친환경 비료 살포, 병해충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민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농작업 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농약 살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프랑스는 2025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2025. 4. 23., 법률 제2025-365호)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명시하고, 주거지 인접 농지에 농약 살포 시 주민 보호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 관련법령: 「농약관리법」, 「항공안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 주 제 어: 무인항공기, 농업용 드론, 농약 살포, 농약 비산, 무인 항공용 농약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up>1)</sup> 실제로 2023년 기준, 농촌에서 무인항공기 사용의 92% 이상이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였으며,<sup>2)</sup> 이외 파종, 비료 살포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는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항공방제 신고 및 사용 가능 농약 기준 등은 「농약관리법」, 무인항공기<sup>3)</sup> 안전성 인증<sup>4)</sup> 등은 「항공안전법」,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살포 장치 검정<sup>5)</sup>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무인 항공용 등록 농약 및 농약 살포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한편,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즉, 바람의 세기, 방향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추락하거나 농약이 비산되어 인접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비산된 농약이 인접 주택가로 날아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는 농약 살포 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무인 항공 방제법」)<sup>6)</sup>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가파른 농지(경사도가 20% 이상), 고온 다습한 바나나 농지, 모종용 포도나무 농지(대부분 경사도가 20% 이상)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또는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 살포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무인항공기 안전 방제 교육자료 배포-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소책자 등 자료 제작, 2023.4.5.

2) 한국농기계신문, [전문가 기고] "드론 이용 농사짓고 살기 편한 농산어촌으로", 2023.6.20.

3)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에 속하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를 말한다. 프랑스에서 무인항공기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용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4) 무인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하면 항공안전기술원에 의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 경우에도 무인항공기가 최대이륙중량 25Kg를 초과하면 인증 및 운영 허가가 필요하다.

5)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살포 장치 및 방제 작업 등 농업기계로서의 기능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

6) LOI n° 2025-365 du 23 avril 2025 visant à améliorer le traitement des maladies affectant les cultures végétales à l'aide d'aéronefs télépilotés.

### 1. 입법 배경<sup>가)</sup>

- **(농업 종사자 건강 보호)** 경사진 농지에서 수작업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노출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약 2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이는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정밀 살포는 불필요한 농약 사용량의 절감과 환경오염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에 기여한다. 특히 유기농업 또는 '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sup>하)</sup>에서의 활용은 불필요한 농약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
- **(경사지 농지 등의 작업 안전 및 효율성 문제 해결)** 전통적인 지상살포 방식은 경사진 농지 등에서 작업하는 농민에게 물리적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농지는 기계 접근이 곤란하고, 혹 기계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토양 압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 **(국제 흐름에 부응한 기술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유럽 국가들이 이미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업 기술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세계 농산물 수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과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

가) 프랑스 하원 의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b0380\\_proposition-loi](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b0380_proposition-loi)

하) 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란 「농업수산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제L.611-6조에 따라 일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농지를 의미한다. 즉 농업 생산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 자원 절약, 오염 저감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해 공식 인증을 받은 농지를 의미한다.

## 2. 주요 내용

- 프랑스 의회는 2025년 4월 23일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치료 개선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무인 항공 방제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은 단일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p><b>평상시</b> 제1bis항 B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포가 가능한 경우: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환경에 명백한 이점이 있는 경우</li> <li>· 살포가 가능한 농약: 생물학적 농약 제품, 유기농업에서 허가된 농약 및 저위험 농약</li> <li>· 살포가 가능한 농지: 경사도가 20% 이상인 농지, 바나나 농지<sup>9)</sup> 또는 포도나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종(Porte-greffes)용 포도나무 농지<sup>10)</sup></li> <li>· 허가: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프랑스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sup>11)</sup>의 의견 및 관련 직능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명령으로 농약 살포 허가조건을 명시함</li> </ul>
<p><b>보건 비상 사태</b> 제1bis항 A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포가 가능한 경우: 다른 수단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보건상 위험이 있는 경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 가능</li> <li>· 살포가 가능한 농약: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약</li> <li>· 살포가 가능한 농지: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li> <li>· 허가: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를 담당하는 장관들은 공동 명령을 통해 임시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에 농약 살포를 허가할 수 있음</li> </ul>
<p><b>시험 평가 농지</b> 제1ter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평가 대상 농지: 무인항공기를 통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농지</li> <li>· 살포가 가능한 농약: 생물학적 농약 제품, 유기농업에서 허가된 농약 및 저위험 농약</li> <li>· 기간: 최대 3년</li> </ul>
<p><b>주민 보호 조치</b>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보호조치 마련: 거주지 및 주민 여가 활용 공간 인접 농지에 농약 살포 시</li> <li>· 주민 보호조치 마련 불이행 시: 도지사는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li> </ul>

9) 바나나 농지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등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 위치하고 있다.

10) 프랑스의 주요 와인 산지(코르 로티, 알자스, 론 벨리, 주라 등)의 경사도는 20%~60%에 달한다.

11) 프랑스 식품환경위생안전청(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Anses)은 공공기관으로 인간과 동물의 식품 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건, 농업, 환경, 노동 및 소비를 담당하는 부처의 공동 감독을 받고 있다.

## 1)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 ● 무인항공기 활용

-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의 공중 살포는 지상살포에 비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농약 살포 시 '생물학적 방제용 농약, 유기농업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 2009년 10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1107/2009호<sup>12)</sup> 제47조의 의미<sup>13)</sup> 내의 저위험 농약(이하, 저위험 농약 등)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도 20% 이상인 농지, 바나나 농지<sup>14)</sup>, 포도나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종(Porte-greffes)용 포도나무 농지(이하, 살포 가능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 위의 경우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 장관은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의 자문을 받은 후, 농업인 및 농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직능단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09년 10월 21일 제정한 지속 가능한 농약 사용을 위한 공동체 행동 체계 마련에 관한 지침 2009/128/EC'<sup>15)</sup>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동 명령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허용 조건을 규정한다.
- 다른 수단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보건상의 위해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농업부, 보건부 장관의 공동 명령에 따라 모든 농약을 보건상 필요한 모든 농지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할 수 있다.

### ● 시험 평가

-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중 살포가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 평가 대상 농지의 경우 최대 3년간 저위험 농약 등을 뿌릴 수 있다.<sup>16)</sup> 시험 결과는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이 평가하며, 평가 보고서는 의회 과학기술선택 평가국(OPECST)<sup>17)</sup>에 제출된다.

12) Règlement (CE) n° 1107/2009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octobre 2009

13) 농약의 모든 유효성분이 저위험 유효성분이어서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위험 농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위험 농약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약의 유효성분이 저위험 유효성분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충분한 효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척추동물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14) 바나나 농지는 일반적으로 덩고 습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15) Directive 2009/128/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octobre 2009 instaurant un cadre d'action communautaire pour parvenir à une utilisation des pesticides compatible avec le développement durable

16) 시험의 목적은 무인 항공 방식의 살포 방식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지상 살포에 비해 뚜렷한 이점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17)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국(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은 하원과 상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보기관으로, 과학기술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를 의회에 알림으로써 의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 시험 평가의 허가조건과 시행방식 그리고 평가 결과를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국(OPECST)에 전달하는 방식은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이 정한다.
- 평가 결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살포하는 방식이 지상살포 방식에 비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뚜렷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 농업부 및 보건부 장관은 공동 명령을 통해 시험 평가 대상 농지를 살포 가능 농지로 등록할 수 있다.

## 2) 주민 보호조치

- 「무인 항공 방제법」은 살포 방식 여부(무인항공기 살포 방식, 지상살포 방식 등)와 상관없이 주거 건물이나 주민들의 여가용 공간에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작물의 해충에 대한 통합 방제의 일환으로 자연적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물질과 제품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방제용 농약<sup>18)</sup>과 2009년 10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7/2009호에 따른 기초물질<sup>19)</sup> 또는 저위험 물질<sup>20)</sup>만으로 구성된 농약은 주민 보호조치 없이 살포될 수 있다.
- 주민 보호조치는 농약 살포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지형, 토양, 기후 환경, 보건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농약을 살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한 후 보호 및 예방조치, 통보 방법, 시간대 제한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 이행 서약서를 도(道) 단위에서 정한 양식 및 지침<sup>21)</sup>에 따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 주민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식품환경 위생안전청(ANSES)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8) 매크로 유기체, 미생물-페로몬-카이로몬과 같은 화학 매개 물질, 식물·동물·광물 기원의 천연물질을 포함한 농약을 말한다.

19) 주로 식품으로 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는 물질로, 식초, 우유, 설탕, 천연오일 등이 있다.

20) 사람·동물·환경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고 특별한 위험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일부 식물성 추출물, 천연 페로몬, 해충 억제용 미생물체, 천연 식물성 살충제 등이 있다.

21) 예를 들어 르아르(Loire) 도의 지침에는 ▲시장 유통 허가를 받은 농약만을 사용, ▲민감 구역 즉,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간(학교, 의료복지시설, 공원 등)에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준수, ▲살포 전 현지 기상 조건, 특히 풍속과 강수량을 고려, 수차원 인근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농약 살포 장비의 정기 점검 (2020년 이후 매 3년 정기 점검), ▲살포 농약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소지, ▲인접 거주자 노출 측면에서 동등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대체 조치 마련, ▲안전거리 준수 등이 있다.

##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 비산으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와 주민 건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프랑스는 2025년 「무인 항공 방제법」을 제정하여 환경 및 보건상 명백한 이점이 있는 경우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하고 있다. 특히 살포 가능한 농약의 종류를 한정하고, 농지 역시 경사도 20% 이상 등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살포 가능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 및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국(OPECST)와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증이 필수적이며, 허용 여부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공동 명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프랑스는 인접 주거지나 주민 생활 공간과 인접한 농지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조치 마련 시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만약 이러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농약 살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추천 자료

- 농촌진흥청 등,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통합본), 2024
- M. Jean-Luc FUGIT,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CONOMIQUES SUR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méliorer le traitement des maladies affectant les cultures végétales à l'aide d'aéronefs télépilotes (n° 380), ASSEMBLÉE NATIONALE, 2024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175